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의 신설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의 소유 주택(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토록 한 종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감면 목적상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4조).
- 다. 감면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안 제23조).
- 라.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적

용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Ⅲ.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2007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지방세제팀-6609)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해 신설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의 신설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괄 정비·보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취지

○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생활보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관련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이 신설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3. 전부개정방식의 필요성 여부

○ 어느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과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조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위 정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시행일에 관하여 소급적용한 것이외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참고로 자치구별 구세감면 조례 개정 현황을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완료한 은평, 마포, 서초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4. 세수결함에 대한 방안 강구 필요성

○ 구 재정여건상 앞으로 감면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여건은 더욱더 열악해 질 것이며, 또한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한 다각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1>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충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4.11]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6609. 2006. 10. 31)

[표 1]

자치구별 구세감면 조례 개정 현황

2007. 6. 20 현재

구 별	개정일자	시행일 소급적용 여부	비 고
종로	의회 심사중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중구	2007. 5. 11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용산	2007. 5. 10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성동	미 개정		
광진	2007. 3. 21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동대문	미 개정		
중랑	2007. 5. 17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성북	2007. 4. 30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강북	미 개정		
도봉	2007. 5. 18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노원	미 개정		
은평	2007. 3. 2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대문	2007. 3. 27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마포	2007. 6. 14	2007. 6. 1일부터 소급적용	
양천	2007. 5. 30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강서	2007. 4. 16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구로	미 개정		
금천	2007. 5. 23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영등포	2007. 6. 1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동작	2007. 3. 30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관악	2007. 5. 25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서초	2007. 5. 31	2007. 6. 1일부터 소급적용	
강남	미 개정		
송파	2007. 5. 10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강동	2007. 4. 25	2007. 1. 1일부터 소급적용	